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85
----------	-----

제출년월일 : 2001. 1.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이 삭제됨으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련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1990. 7. 6. 조례 제179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사 업 명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수도사업	30인이상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공업용수도사업	20인이상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궤도사업	100인이상	보유차량50량이상
자동차운송사업	50인이상	보유차량30대이상
가스사업	30인이상	공급건수 1만건이상
지방도로사업	10인이상	도로관리연장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하수도사업	30인이상	하수처리시설 구비
청소·위생사업	10인이상	1일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이상
주택사업	10인이상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의료사업	20인이상	병상수 20개이상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0인이상	연간 매·화장 2천건이상
주차장사업	10인이상	주차규모 500대이상
토지개발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시장사업	5인이상	관리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관광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또는 연간이용인원 10만명이상

② 삭제